

제 2019 - 10호	<h1>가정통신문</h1>	전주한일고등학교
		http://hanilgo.hs.kr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42 교무실 ☎063-274-2162 행정실 ☎063-274-2161

학교안전공제회 안내문

안녕하십니까?

학교 교육활동중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가입되어있는 학교안전공제회(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)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. 학부모님께서도 안전지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제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사고

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·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, 특별활동, 재량활동, 과외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,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,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,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

2. 공제급여지급이 제외되는 사고

-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
- 피공제자, 공제가입자 아닌 제3자의 고의,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
-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없이 발생한 자살, 자해 등의 사고
-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고 등

3. 공제급여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는 사고

- 등·하교 중 발생한 사고
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해 등·하교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
- 교육활동 전후 학교체류시간 중 발생한 사고
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
- 수학여행, 교외학습활동 및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
 수학여행, 교외학습활동 및 수련시설에서의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해당 시설에서 가입한 보험 또는 여행자 보험에서 우선 보상
-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
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거나 법정 다툼으로 손해배상이 지연되는 경우 공제회가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

4. 공제급여 청구

- 가. 학부모의 의료보험증으로 치료 완료 후 공제 급여 청구(학교에서 사고통지 후)
 나. 학부모님이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학교안전공제회 ‘공제급여관리시스템’ 접속(<http://www.schoolsafe.or.kr>)
 - 학부모사용자 : 모바일인증 로그인
 - 상단의 공제급여청구 : 청구서 작성(청구서류는 우편(등기)발송 또는 방문 제출)
 - 보내실 주소 : **(우편번호:55065)**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
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 앞 전화 : 063) 239-3649
 - 공제급여 지급은 청구서류가 공제회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합니다.
 (사유가 있는 경우 14일 연장 가능)
 - 구비서류 : 공제급여청구서,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원본, 청구인 통장사본,
 진료비 세부내역서(비급여금액이 있는 경우), 진단서(50만원 이상 청구 시),
 주민등록등본(50만원 이상 청구 시)

5. 공제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

- 가. 병원영수증은 퇴원 및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만 인정
- 인정되지 않는 영수증 : 진료비 납입확인서, 간이영수증, 카드매출전표
- 나. 공제급여 지급 시 제외되는 항목
- 비급여 주사료, 비급여 입원료(병실차액), 비급여 물리·한방치료료 및 광선치료비 등
 - 보철치료비 : 1대 당 40만원 한도 지급
 - 레진 및 포스트 : 1대 당 레진(12만원), 포스트(12만4천원) 각 한도별 지급
 - MRI :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
 - 보조기 구입 : 의사의 소견서 및 세금계산서(원본)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
- 다. 사고발생일과 병원 내원일이 상이할 경우
- 사고가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 입증자료 제출
 (보건일지, 목격자진술서, 사고발생확인서 등)

6. 공제급여 지급결정(학교안전공제회)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이 정하는 급여의 범위 안에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

- 가. 학부모 수령 시 사고 종결
- 공제회는 공제급여 지급결정 후 결정금액을 청구인에게 즉시 송금
 - 학부모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결정사항 전송(공제회)
 - 학교에서는 공제급여 결정 통보서를 학부모에게 전송
- 나. 학부모 수령 거부 및 이의신청
- 공제회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: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심사
 -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 시 재심사 청구
 - . 재심사청구(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재심사)
 - . 재심사 결과 수용 시 사고 종결
 - . 재심사 결과 불복 시 소송 가능

2019. 3. 14.

전 주 한 일 고 등 학 교 장